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(전문위원)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(5급 전문위원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9월 6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시험일정

□ 임용분야

임용분야	임용직급	인원	근무부서	직무내용
전문위원	임기제 지방행정 사무관 (5급)	1명	강남구의회	○ 조례안, 예산안, 결의안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○ 자치입법활동, 행정사무감사·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○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질의자료 제공 ○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의회관련 업무 전반

○ 임용기간 : 최초임용일로부터 ~ 2026. 2. 28.

※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□ 시험일정

원서접수	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	인성검사	2차 면접시험	면접합격자발표	임용예정일
'24.9.19.(목) ~9.23.(월)	'24.9.26.(목) 예정	'24.9.27.(금) ~9.29.(일)예정	'24.10.2.(수) 예정	'24.10.4.(금) 예정	'24.10.11.(금)

※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,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
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.

2. 관련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, 제27조(신규임용)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. 응시 자격 요건

□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지역·성별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인 자

▶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정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

※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1.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2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3.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: 의회·법제, 지방행정, 지방자치 분야

※ 경력인정범위 : 국회, 지방의회,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,
정부투자기관,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, 법률에 의해
설립된 공사·공단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

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)

※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
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□ 근무조건

-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(09:00 ~ 18:00)
- 복무기준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준용

□ 보수 및 수당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.
-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보수규정 제34조 관련) (단위: 천원)

구 분	상한액(천원)	하한액(천원)
5급(상당)	-	65,346

- ※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
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방법

□ 시험일정

- 1차 서류전형 및 인성검사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인 성 검 사	
	날 짜	방 법
'24.9.26.(목)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공고	'24.9.27.(금) ~ 9.29.(일)	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를 이용한 온라인

○ 2차 면접시험

면 접 시 험		면접시험 합격자 발표
날 짜	장 소	
'24.10.2.(수)	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 ※대기장소 : 6층 본회의장	'24.10.4.(금) 한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※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함.
(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면접 일정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가. 1차 서류전형(자격요건, 경력사항 등 심사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, 경력기간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인성검사

- 대 상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
- 방 법 :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를 이용한 온라인 검사
-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자료를 면접시 활용
-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예정임
-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시 면접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

다. 2차 면접시험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
-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- ※ 5대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-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라.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
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,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개별통보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

6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□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9.19.(목) ~ 9.23.(월) 18:00까지 / (3일간)
 - 접수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(3층)/강남구 대치동 소재
 -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☞ 등기 우편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의정팀으로 연락바람
 - 접수시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
 -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내에만 접수가능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※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/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

-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.(우편접수시 사전에 연락바람)
- ▷ 주소 : 우)0628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4, 3층 의회사무국 의정팀(강남구의회, 대치동)
 - ▷ 우편접수자는 휴대폰 SMS로 접수현황을 통보할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현장에서 배부(☎02-3423-8103)
 - ▷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'통상환증서'를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(현금×)

□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

-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 - 응시원서 1부
 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(3×4cm) 1매 이메일 제출(ks0329@gangnam.go.kr)
 - 응시수수료 : 강남구 수입증지 10,000원
- ※ 강남구청 민원여권과(본관 1층)에서 근무 시간 내(09:00~18:00) 인증기 날인

○ 이력서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건강보험공단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

※ 자유롭게 기술하되,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추진계획,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○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1부

○ 인성검사 결과 활용 동의서 1부

○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
○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
-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※ 응시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고,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
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(원본)에 한해 인정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(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. 다만,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)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<http://www.nhic.or.kr> 발급) 반드시 첨부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
-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

나. 개별사항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○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

○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

○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(관련분야 자격(면허)증 사본, 상훈 등)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(경력증명서 제외)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
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학력·경력·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. 단,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임용 후 퇴사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면접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(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)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문의전화 : 02-3423-8103)

직무기술서

임용예정기관명	임용예정직위	근무예정부서	임용예정직급
강남구의회	전문위원	강남구 의회사무국	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례안, 예산안, 결의안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- 자치입법활동, 행정사무감사·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-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질의자료 제공 -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의회관련 업무 전반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회 소관 각종 조례안과 예·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능력 -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비판능력을 통한 견제능력 - 행정사무감사 보좌능력 및 의사진행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력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의회와 의사진행,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지식 - 강남구 조직과 기구 등 위원회 소관 조례안 처리를 위한 관련법령 및 규정관련 지식 - 예·결산안 분석 및 검토를 위한 지식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응시자격요건	<p>※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관련분야 실무경력 : 의회·법제, 지방행정, 지방자치 분야 ☞ 경력인정범위 : 국회, 지방의회,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, 정부투자기관,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,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·공단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